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03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중소·중견기업 특허공제부금 세액공제 신설	3
2. 중소·중견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신설(윤후덕의원안)	8
3. 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윤후덕의원안) ...	12

I. 개요

1.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03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0.

(3) 회 부 일 : 2025. 2.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의 출원·등록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특허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불법적인 제품들도 동시에 시장에 범람하게 되어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출원, 특허분쟁 등의 비용 부담을 지원하고자 특허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특허공제부금 납입비용, 특허의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비용, 특허정보의 조사·분석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공제부금 납입, 특허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 특허와 관련된 여러 비용에 조세감면 특례를 둬으로써 중

소·중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소·중견기업 특허공제부금 세액공제 신설(윤후덕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특허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1조) ○ 공제대상: 중소·중견기업이 「발명진흥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허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공제부금 ○ 공제율: 7%(중소기업), 3%(중견기업) ○ 적용기한: 2030년 12월 31일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동 세액공제 미적용 ○ 추계과세기 미적용 ○ 최저한세 적용 ○ 이월공제 적용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한 특허공제부금부터 적용

* 윤후덕의원안 2025. 2. 10. 발의(의안번호 8032)

□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명진흥법」

제50조의4¹⁾에 따른 특허공제(共濟)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공제부금

1) 「발명진흥법」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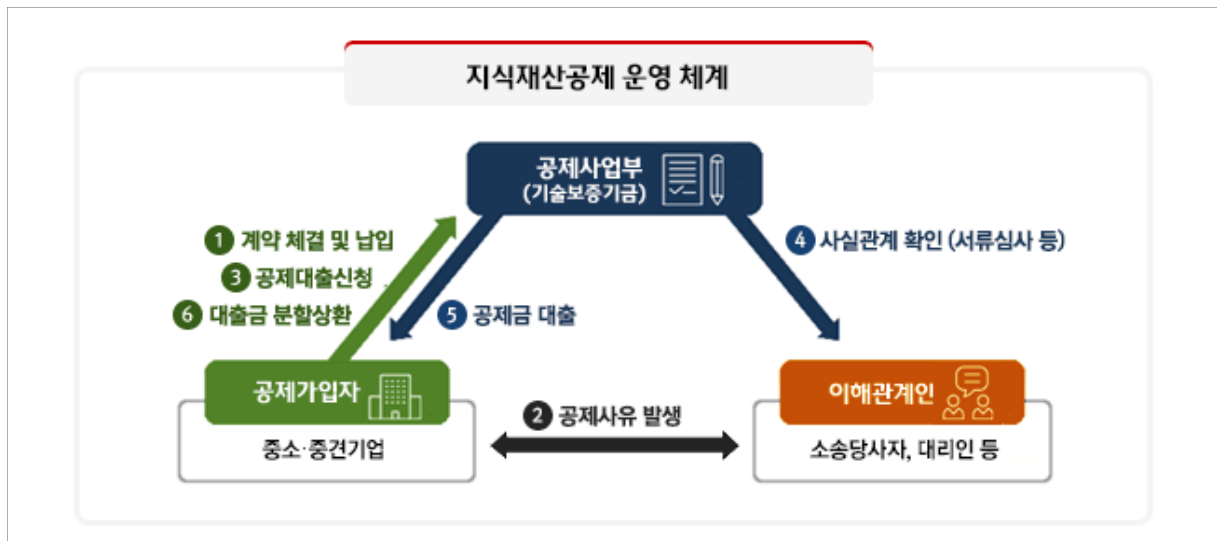
의 7%(중견기업은 3%)를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특허공제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 현행 「발명진흥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허공제제도는 특허분쟁으로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분산·완화하는 공제사업으로서, 특허공제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인 특허청은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하여 2019년 9월부터 특허공제상품을 출시하고 제도를 시행 중임.

이후 2021년 1월 본 공제의 사업지원 범위가 특허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공제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지식재산공제제도의 상품구조를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등 공제가입자는 기술보증기금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부금월액을 납입함. 가입자는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출원·심판·침해소송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부금의 5배 범위 내에서 해당 분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먼저 대출받아 활용하고 사후 5년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분할상환함. 가입자가 납입하는 월별 부금은 일정한 이자율로 적립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제부금 가입자에게 납부금액과 해지가산금 등이 지급됨.

한다.



자료: 특허청

□ 현재 국내외 특허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²⁾ 중소·중견기업은 자금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분쟁에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해외 특허관리기업(NPE)³⁾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인하여 해당 중소·중견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특허공제의 가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특허공제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특허침해소송은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판매를 금지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직면하는 소송의 95%가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발생하여 해외수출의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액이 국내 대비 높아 피소기업에게 큰 부담으

2)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관리기업의 특허소송은 2019년 90건에서 2022년 126건으로 증가하였음.

3) NPE(Non-Practicing Entity)는 보유 특허권으로 직접 제조, 판매 등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함.

로 작용하고 있음⁴⁾.

또한, 특허청은 2019년부터 매년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형태로 지식재산공제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해왔으나, 지식재산공제의 자립 요구에 따라 2025년부터 출연금 지급을 중지하였음⁵⁾.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라 특허공제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유무형 자산 보호를 위하여 다른 보험에 가입한 기업 및 자체 재원으로 특허소송 등을 수행하는 기업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⁶⁾.

둘째, 특허공제제도에 가입할 경우 낮은 대출이율(현재 3%)로 대출이 실행되고 시중보다 높은 이자율(현재 3%)이 지급되며,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계약·세무·회계 관련 무료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공제 가입기업이 특허청의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각종 우대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세제지원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수 있음.

셋째,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0개소)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의 지식재산권 상담,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 서비스를 제공

4) 우리나라: 손해배상액 중앙값 1억원, 1심 소송비용 평균값 1.7억원~4.6억원
미국: 손해배상액 중앙값 69억원, 1심 소송비용 평균값 11.5억원~69억원
*출처: 특허청

5) 2021년·2022년: 5,000억원, 2023년·2024년: 4,000억원, 2025년: 0원

6) 특허공제제도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은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료의 성격으로서, 유무형자산의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이나 가맹사업보증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하고 있고, 우리기업과 해외 경쟁사 간 분쟁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 지원 등을 위하여 2025년 250억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련 재정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2.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신설(윤후덕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중소기업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1조의2) ○ 공제대상: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특허비용”, 다만 국가·지자체로부터의 출연금 등 자산을 지원받은 금액 제외)을 지출한 경우 해당 특허비용 ○ 공제율: 10% ○ 적용기한: 없음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동 세액공제 미적용 ○ 추계과세기 미적용 ○ 최저한세 미적용 ○ 이월공제 적용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한 특허비용부터 적용

* 윤후덕의원안 2025. 2. 10. 발의(의안번호 8032)

□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특허비용”, 다만 국가·지자체로부터의 출연금 등 자산을 지원받은 금액 제외)을 지출한 경우, 해당 특허비용의 10%를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세액공제의 형태로 경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원천기술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재산권이 1건 증가할 경우 약 1,700만원의 매출이 증가하고, 특허성장률이 1%p 증가하면 1인당 GDP 성장률은 0.65% 증가하며, 지식재산(IP) 서비스산업은 R&D 단계부터 IP창출·보호·활용단계까지 발생하는 중간서비스 수요를 지원하므로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연구에서 특허활동 증가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⁷⁾.

해외 특허출원 건수가 없는 34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42개 기업(41.5%)이 해외 특허출원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신설이 특허출원 및 등록 등 지식재산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총 500개 기업 중 384개 기업(76.8%)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⁸⁾ 세제지원을 비롯한 비용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둘째,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특허비용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은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하여 지출된 변호

7)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및 특허 정보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2020. 9.

8)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및 특허 정보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2020. 9.

사 비용, 특허취득비용 등이 R&D 세액공제에 포함되고 있으며, 중국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등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의 150%를 비용에서 공제하고 있음. 또한, 프랑스도 특허생산 및 유지비용, 방어·보호비용 등을 R&D 세액공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임.

□ 다만, 본 제도의 도입 타당성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제시한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1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에 따르면, 동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업재산권의 취득실적이 증가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못하였고,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효과성이 낮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음.

‘202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및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에 따르면,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보다 재정지원제도가 더 많은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은 재정지원제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평가는 공통적으로 세액공제의 구조상 한계를 지적하면서, 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혜대상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기업으로 한정되는 바 더욱 어려운 여건에 처한 기업에 지원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54

3. 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윤후덕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1조의3) ○ 공제대상: 중소기업이 국내외 특허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 다만, 국가·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원받은 금액 제외)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 공제율: 25% ○ 적용기한: 없음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동 세액공제 미적용 ○ 추계과세기 미적용 ○ 최저한세 미적용 ○ 이월공제 적용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한 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부터 적용

* 윤후덕의원안 2025. 2. 10. 발의(의안번호 8032)

□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국내외 특허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 국가·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원받은 금액 제외)을 지출하는 경우 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조사·분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선행적인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통해 경쟁사의 특허기술을 회피하고 효과적인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허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약 5,000만원이 소요⁹⁾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은 수준이며, 중소기업이 R&D 선행 특허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사유로 전문인력부족(41.1%)에 이어 비용부담(26.4%)을 지적¹⁰⁾하고 있음.

기존 연구¹¹⁾에 따르면 선행기술조사가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유의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분석¹²⁾되고 있는데, 동 세액공제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조사·분석이 촉진될 경우 중소기업 R&D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세액공제 제도는 구조적으로 공제할 세액이 있는 특허법인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수행하였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여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본 제도의 도입 타당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9) 특허청, 2019년 세법개정 건의문, 2019.

10)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지식재산(IP)활용 애로조사’, 2019. 6.

11) 임부루·박규호·이근, ‘선행기술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특허성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19권1호, 기술경영경제학회, 2011.6.

12)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투입요소, 개발주체 특성, 자금공급자 요소, 해당 사업의 분야별 특성 등을 통제하여 추정한 결과,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을 받은 과제가 평균적으로 과제당 0.663개~0.729개의 특허를 더 출원하고, 0.171개~0.206개의 특허를 더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행한 ‘201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와 ‘202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및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결과, 본 제도의 도입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만약 도입되더라도 수혜 대상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기업으로 한정되는 바 더욱 어려운 여건에 처한 기업에 지원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되었음.

둘째, 현행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은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하여 2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2021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¹³⁾에 따라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도 R&D 비용 세액공제의 범위에 추가되었음.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사. 중소기업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주)}
	대	중견	중소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문 의 처

02)6788-5154